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45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정진욱 · 양부남 · 한민수
안도걸 · 박민규 · 이개호
박지원 · 조인철 · 전진숙
허성무 · 정준호 · 이연주
이주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또는 예방 조치를 명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회복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와 시정 조치 이행 관련 자료가 대부분 침해자 측에 편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판결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침해금지 조치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영업비밀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를 강화하고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8(판결등의 이행확인)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 또는 결정(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결등의 상대방(이하 “의무이행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한 판결등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판결등
3. 판결등에서 특정된 대상에 관한 이행 조치의 증빙자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창고·판매장 등(주거는 제외한다)에 출입하여 판결등에서 특정된 범위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과 자료 제출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황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8(판결등의 이행확인) ①</u> <u>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력</u> <u>있는 판결 또는 결정(이하 “판</u> <u>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u> <u>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u> <u>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결등의</u> <u>상대방(이하 “의무이행자”라 한</u> <u>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u> <u>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u> <u>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1. <u>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u> <u>등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명하</u> <u>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u> <u>조치를 명한 판결등</u> 2. <u>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비</u> <u>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u> <u>방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u> <u>에 따른 조치를 명한 판결등</u> 3. <u>판결등에서 특정된 대상에</u> <u>관한 이행 조치의 증빙자료</u> <u>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u>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설>

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창고·판매장 등(주거는 제외한다)에 출입하여 판결 등에서 특정된 범위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과 자료 제출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확인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

② (생략)	<u>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u> <u>에 따른 현황 확인을 거부 .</u> <u>방해 또는 기피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